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3689호

시행일자 2022. 2. 14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 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 과
개원의협의회회장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
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6호) 안내
포함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839호 (2022. 2. 11.)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및 그동안의 코로나
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
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
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

1.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2. 개정 고시 및 안내사항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